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제265회 제2차 정례회 (2023. 11. 30.)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을제 보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 검토보고서



행정건설위원회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을제 보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 검토보고

행정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권하나

### 1. 제출경위

- 가. 의안번호: 23-163
- 나. 제안자: 강동오 의원 외 9인
- 다. 제안일자: 2023년 11월 17일(금)
- 라. 위원회 회부일자: 2023년 11월 20일(월)

### 2. 제안사유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내 마을 등에서 전통적으로 거행되는 마을제를 보전·전승시켜 향토 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지역 문화 관광자원으로 발전시키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안 제2조)
- 나. 보전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다. 마을제 지원 및 지정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안 제5조)

### 4. 관계법령

- 1) 「지방자치법」 제13조

2) 「문화기본법」 제9조, 제13조

## 5. 검토보고

### 가. 제정 목적

- 동 조례 제정안은 2023년 11월 17일 강동오 의원의 대표발의로 제안되어 11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정 취지는 마포구 관내 마을 등에서 전통적으로 거행되는 마을제를 보전·전승시켜 향토 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지역 문화 관광자원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임.
- 현재 마포구는 제정안과 관련 6개의 ‘마을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이의 원형을 보존하고 시대적 전승을 위한 지원 근거 및 기준이 마련되지 않음.
  - 지원근거 및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마을제’ 행사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짐에 따라 행사단체 간 형평성 위배 논란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조례 제정을 통해 마을제 전통 의례들의 보존·전승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원 시의 형평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음.

#### < 마포구 마을제 현황 >

(2023년도 본예산 기준, 단위: 천원)

구 분	내 용	소요예산	개최결과
창전동 부군당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일시: 2023. 1. 23.(월)(매년 음력 1월 2일)</li><li>- 장소: 창전동 부군당 (※밤섬 부군당제 :서울시 무형문화제 제35호, 2005.1.10.)</li><li>- 내용: 마을의 무사안녕과 번영을 기원</li></ul>	3,000	1.23. 60명참여
마포나루굿 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일시: 매년 음력 단오 이전 행사(금년 4월 22일)</li><li>- 장소: 한강시민공원 망원지구</li><li>- 내용: 마포항을 드나드는 선박들의 무사항해와 마포의 안녕과 번영기원</li></ul>	17,000	6.3. 200명참여

밤섬실향민 귀향제	- 일시: 2023. 9.16.(토)(매년 추석전후) - 장소: 한강시민공원 망원보트 선착장, 한강 내 밤섬 - 내용: 추석명절을 맞이하여 밤섬 실향민 고향방문행사	6,000	9.16. 100명참여
당인동 부군당제	- 일시: 2023.11.13.(월)(매년 음력 10월 1일) - 장소: 당인동 부군당 - 내용: 지역 주민의 화합과 안녕을 기원	2,500	11.13. 개최예정
공민왕 사당제	- 일시: 2023.11.13.(월)(매년 음력 10월 1일) - 장소: 공민왕사당(2006년 등록문화재 제231호 지정) - 내용: 제관행렬, 개회식, 봉제거행, 주민화합의 장	6,000	11.13. 개최예정
마포동 불당제	- 일시: 2023.7.7./12.2.(매년 음력 5월20일,10월20일) - 장소: 마포동민회관 - 내용: 화재예방 및 구민 안녕 기원 제례행사	2,000	7.7. / 12.2. 80명참여

## 나. 조문 검토

- 제정안을 조문별로 살펴보면,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 규정으로, “마을제란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내 동 또는 자연마을 단위로 마을의 안녕 등을 기원하는 동당제, 당산제, 산신제, 추모제 등의 민속 행사를 말한다”고 명시하였음.
- 서울시 자치구 중 마을제 관련 조례를 제정한 곳은 강동구만 있으나 향토 문화재 보호 관련 조례를 제정한 곳은 9개 자치구<sup>1)</sup>가 있음.
  - 전국의 마을제·당산제 등의 전통문화 계승 등에 관한 지방자치단체별 조례 제정 현황은 총 7건이며, 충남 공주시와 청양군에서 「마을제 보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는 「마을 전승의례 지원 조례」라는 명칭으로 제정되었고, 부산 북구 등 80여 개 광역, 기초자치단체에서는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등의 명칭으로 제정되어 주민들이 전통문화를 보존하고, 민속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1) 강남구, 강북구, 노원구, 도봉구, 양천구, 영등포구, 용산구, 종구, 중랑구

- 안 제3조는 구청장이 관내 마을제 보전, 지원 및 전승을 위하여 마포구 차원의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함.
- 안 제4조는 구청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마을제 봉행, 마을제 관련 기록 및 학술조사 사업, 마을제 보전 및 활용 사업에 대해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 안 제5조는 이 조례안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안 제4조에 따라 공식적으로 지원 대상 마을제로 지정받도록 하는 의무 규정임. 또한, 마을제로 지정하는 것은 구청장의 재량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5항제4항은 구청장이 마을제로 지정하기 전에 마을제 관련 자료수집과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임.

#### 다. 종합 검토 결과

- 이와 같이 살펴본 바, 본 조례안은 마포구 관내 마을 등에서 전통적으로 거행되는 마을제를 보전·전승하기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입법 취지가 타당하다고 할 것임
- 또한, 「지방자치법」 제13조에 지방문화의 진흥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규정하였으며, 동법 제28조에서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위법령에도 위배됨이 없음.
- 향후 마을제를 보전·전승하기 위해 관련 단체를 지원함에 있어 수혜대상 단체의 선정 시에 공정성과 보편타당성이 확보되어야 본래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붙임 1****자치단체 조례 제정 현황**

(‘23. 10월 기준)

연 번	지 역 명	소 관 부 서	조 례 명	제 정 시 기
1	충청남도 공주시	기획예산담당관	공주시 마을제 보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2019.06.03.
2	부산광역시 진구	문화관광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마을제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9.09.24.
3	부산광역시 사상구	문화체육과	부산광역시 사상구 마을제 보전 및 지원 조례	2023.04.06.
4	경기도 이천시	문예관광과	이천시 마을제 보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2021.05.01.
5	제주특별자치도	자치행정과	제주특별자치도 마을 전승의례 지원 조례	2017.12.29.
6	충청남도 청양군	농촌공동체과	청양군 마을제 보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2008.05.07.
7	서울특별시 강동구	문화예술과	서울특별시 강동구 마을제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3.09.20.

## ■ 「문화기본법」

제9조(문화 진흥을 위한 분야별 문화정책의 추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문화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문화유산·전통문화의 보전과 활용
2. 국어의 발전과 보전
3. 문화예술의 진흥
4. 문화산업의 진흥
5. 문화자원의 개발과 활용
6. 문화복지의 증진
7. 여가문화의 활성화
8. 문화경관의 관리와 조성
9. 국제 문화 교류·협력의 활성화
10. 지역문화의 활성화
11. 남북 문화 교류의 활성화

제13조(문화 진흥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 진흥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문화 진흥을 위한 민간의 재원 조성과 기부문화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와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

가.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운영·지도

나. 도서관·운동장·광장·체육관·박물관·공연장·미술관·음악당 등 공공교육·체육·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다. 지방문화재의 지정·등록·보존 및 관리

라.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마.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